

## 일곱

### □ 비전과 가치(이념과 지향)

우리는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온 수많은 사람들의 열망과 의지를 기억하며, 모든 사람의 평등한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하기 위해 활동한다. 이러한 인권 옹호 활동을 통해 지금, 여기에서 실질적이고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한국 사회와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화된 세계에 평화와 공존, 협력의 가치를 뿌리내리며, 새로운 사회적 연대와 자율성에 기초한 삶의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1. 인권, 평화, 생명의 이념적 가치 추구
2. 시민적 자율성과 사회적 연대성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실질적 진전
3. 대화와 소통, 연대와 협력을 통한 인권의 공공 영역 창출
4. 모든 영역에서 소수자 차별 철폐 및 평등과 다양성의 가치 실현

### □ 미션(전략적 목표와 과제)

- 인권 증진과 차별 철폐의 선도적 촉진자로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경계를 넘나들며 전문성과 헌신성, 리더십을 발휘하고,
  - 법과 행정, 정책과 관행, 일상의 관습과 문화가 인권에 기초하여 인권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대안적 기준과 모델을 제시하며,
  - 공적으로 부여된 업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내부 구성원들이 보람과 자긍심,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국가기구의 모범을 만들어간다.
1. 독립성과 전문성에 기초하여 정부, 국제인권기구, 시민사회·NGO와 수평적 협력
    - 법적, 재정적, 운영상의 자율성 확보 및 명확한 업무 관할 설정
    - 정부와 의회, 국제인권기구, NGO 및 민간전문가들과 일상적 협력 체계 구축
  2. 인권의식 제고 및 인권 교육
    - 시민적 인권교육과 공공부문 및 전문가에 대한 인권교육 제도화

- 효과적인 인권 홍보 및 지역사회인권운동 촉진
- 인권 자료와 정보의 적절한 수집, 제작, 전달
- 3. 법령, 정책, 제도, 관행의 인권 친화적 개선 권고
  - 인권 관련 주요 법령과 정책에 대한 적극적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
  - 전문적 연구와 충실한 심의, 내외부 협력을 통해 문제해결 대안에 접근
- 4.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의 효과적인 조사와 구제
  - 공정하고 일관된 판단 기준 정립과 효과적인 조사구제 시스템 개발
  - 한국 사회의 인권침해 및 차별 실태에 대한 종합적, 단계적 조사 계획의 수립과 전략적 실천
- 5. 지속가능하고 민주적이며 혁신적인 위원회 운영 및 업무 수행
  - 전략적인 정책 기획 역량 강화 및 직원 전문성 강화
  - 의사결정의 민주적 원칙 준수 및 공정하고 창의적인 인사제도 수립
  - 권위주의 문화 극복 및 평등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

## □ 업무 원칙과 조직 운영 원리

1. 성찰과 책임성
  - 위원회 내부에 대한 자기성찰과 공정한 평가에 기반한 과제 수행
  - 정부와 시민사회, 국제기구, 내부 구성원에 대한 책임성 구현
2. 혁신과 창조
  -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에 창조적으로 대응하기
  - 위원회의 조직, 인사, 업무,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혁신과 실험
  - 직원의 학습과 창조적 역량 강화를 위한 충분한 교육과 훈련기회 제공
3. 신뢰, 존중, 협력
  - 지식과 경험의 공유 및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한 신뢰 구축
  - 모든 직원들의 개성과 인격에 대한 동등한 존중과 인정
  - 내부 갈등의 합리적 조정과 협력
4. 인권 친화성
  - 조직내 양성 평등의 실현과 차이의 인정
  -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체계 마련
  - 생태친화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사무 공간 구성
  - 업무 수행 과정의 안전성 중시

## 여덟

### 1. 비전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와 자유가 존중되고 정의와 평등이 실현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간다

### 2. 미션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기구로서,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차원에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위원회의 책임이자 구성원의 임무로써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 사회적 약자 및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호
- 인권침해 예방과 평등 실현 및 피해자 구제
- 인권 친화적 사회·교육 환경 조성 및 인권의식 제고
- 국내외 인권옹호 그룹과의 연대와 협력

### 3. 추구할 가치

우리는 인권수호와 감시자의 역할에 깊은 자긍심을 느끼며 다음의 가치를 추구한다.

- 평등 : 기회 균등, 차별 없이 동등, 법 앞의 평등
- 정의 :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 제공, 타인과의 공정한 관계
- 평화 : 생명들과의 공존, 빈곤과 억압의 해소, 무력·폭력에 대한 반대
- 관용 : 개인의 창조성 존중, 차이와 다양성 인정

### 4. 업무원칙

우리는 구성원과는 신뢰로, 국민들과는 감동으로 만나기 위해 다음의 업무원칙을 지향한다

- 자기성찰 : 내적 긴장과 인권 감수성 체득
- 자발성 : 열정과 창의적인 자세

- 책임감 : 사회 공동체에 대한 꾸준한 관심
- 현장지향성 : 인권 현실의 적극적 반영
- 민주성 : 구성원의 수평 관계와 다양한 참여 보장
- 개방성 : 조직운영과 업무 공유·공개

## < 해설 >

우리 위원회는 사회의 인권실현을 염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열망, 노력과 헌신으로 설립되었다. 그동안 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 정의 판단의 잣대로 인권을 제시해 왔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깨달았다. 우리의 노력과 열정이 우리 사회를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팀의 비전선언문은 비전·미션·추구할 가치·업무원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이번 기회에 구성원들에게 공유되는 비전과 미션을 마련하고, 비전과 미션을 일상화 하는데 있어 좀더 현실에 친착된 가치와 업무원칙도 필요하겠다는 고민의 결과이다.

비전과 미션은 위원회 조직에 우선 해당하는 사항이다.

비전은 인권 실현의 궁극적 지향인 기본적 권리와 자유·정의·평등 실현을 담았다. 그동안 슬로건으로 사용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은 인권위의 역사를 고려했고, 특히 '사람답게'가 내포한 한국적 정서에 주목했다.

미션은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실현할 역할을 담았다. 인권침해와 차별예방 및 피해자구제는 누구나 공감할 가치지만, 특히 '사회적 약자 및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강조해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한 '인권교육 및 홍보'로 표현되던 임무도 '인권 친화적 사회·교육 환경조성과 인권 의식 제고'로 표현하여, 교육과 홍보가 '업무'가 아닌 '지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외 인권옹호 그룹과의 연대와 협력'은 인권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과의 연대도 포함한다. 위원회가 인권활동가를 키워내는 장이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가치와 업무원칙은 구성원들이 우선 공유해야 할 사항이다.

우리 팀은 우리가 추구할 가치로 평등·정의·평화·관용을 택했다. 이들 가치는 각각의 세부 사항과 함께 우리의 일과 생활에 반영돼야 그 의미가 실현된다.

우리 팀이 정한 업무원칙은 우리 구성원들 스스로가 상호 관계 속에서 실현할 태도에 관한 것이다. 개인은 자기성찰·자발성·책임감을 스스로 쌓고, 조직은 현장지향성·민주성·개방성을 구현한다면, 우리가 열망하는 '인권위다운 인권위'가 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비전선언문을 제출하면서 대중용 버전을 별도로 작성했다. 이것은 인간의 권리를 강조하는 인권위답게 비전과 가치, 미션과 업무원칙을 각각 사람의 머리와 가슴, 눈귀와 손발에 비유하여 좀더 친근한 이미지를 형상화 한 것이다.

**VISION**

**“ 인권, 그 이상의 가치는 없습니다 ”**

※ “인권”이 나와 우리사회 가치판단의 최고 준거기준이 되기를 희망하는 표현임

**MISSION**

- 개인의 인권보호 및 수준향상
-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구현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를 국가인권위원회 임무로 규정

핵심가치	행 동 양 식
평 등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와 나의 가치는 항상 동일함을 인정한다</li> <li>• 모든 개인에게 기회가 평등하게 주워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li> <li>•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가 차별 받지 않도록 배려한다</li> </ul>
전 문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업무의 최고전문가임을 자부하며 끊임없이 혁신한다</li> <li>• 업무의 탁월성과 인권증진을 선도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다</li> <li>• 국내뿐 아닌 국제적 수준에 맞는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다</li> </ul>
민 중 성 (책 임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 Partner와 Networking을 통해 대화와 협력한다</li> <li>• 국민의 편에서 비판과 감시 할 수 있는 비판·감시성을 키운다</li> <li>• 국민의 인권수준향상에 노력하고 끊임없는 책임의식을 갖는다</li> </ul>

※ 인권위원회 직원이 항상 염두 해야 할 덕목으로 평등성, 전문성, 민중성(책임성)을 선정한 행동양식은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직원들이 실천해야 할 목적을 나열한 것임

VISION

“ 인권, 그 이상의 가치는 없습니다 “

MISSION

- 개인의 인권보호 및 수준향상
-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구현

핵심가치	행 동 양 식
평 등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너와 나의 가치는 항상 동일함을 인정한다</li> <li>• 모든 개인에게 기회가 평등하게 주워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li> <li>•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가 차별 받지 않도록 배려한다</li> </ul>
전 문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업무의 최고전문가임을 자부하며 끊임없이 혁신한다</li> <li>• 업무의 탁월성과 인권증진을 선도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다</li> <li>• 국내뿐 아닌 국제적 수준에 맞는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다</li> </ul>
민 증 성 (책 임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 Partner와 Networking을 통해 대화와 협력한다</li> <li>• 국민의 편에서 비판과 감시 할 수 있는 비판·감시성을 키운다</li> <li>• 국민의 인권수준향상에 노력하고 끊임없는 책임의식을 갖는다</li> </ul>

# 이창수 초초초초안입니다.

보낸날짜 : 2005.09.23 16:14

보낸사람 : "새사회연대 이창수"<chairperson@empal.com>

받는사람 : "임송"<song@humanrights.go.kr>

## 발전기획단 전략기획팀 (이창수 초초초초안 일부)

### 1. 위원회 차원

비전 : 평화와 인권 중심의 사회를 선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미션/핵심가치 : Mission 5E

- 인권 존중의 법제도 선도: "새기자! 인권존중의 법제도"(Embedding)
- 개방적인 인권공동체를 통한 반인권 관행의 해소: "없애자! 반인권 관행"(Eliminating)
- 범정부적 차원의 예방적 인권보장체계 수립에 기여: "만들자! 예방적 인권보장체계"(Establishing)
- 인권감수성을 갖춘 공직자상 제시: "사랑받자! 인권피해들과 국민들에게"(Echoing)
- 세계적인 범위의 인권 기준 수립의 기반 확립 "촉진하자! 세계적인 인권기준"(Encouraging)

### 2.

- 인권법원 설립
- 인권피해 집단소송제 도입

empas 엠파스

인터넷의 모든 지식과 블로그를 모아서 한번에 찾아준다  
◆ 엠파스 열린검색



인쇄일 : 2005.09.23 - 16:19:13

닫기



호주 인권과 균등기회 위원회  
**조직 전략계획**  
 (2003년 1월 - 2005년 12월)

**목적**

- 위원회의 비전  
 위원회의 사명  
 위원회의 주요 기능  
 위원회 전체의 의무  
 조직 전략
1. 타 단체/기관과의 협력
  2. 사업, 정책 및 연구
  3. 진정 처리
  4. 교육과 홍보
  5. 공개 조사
  6. 조직 지원

**위원회의 비전 (Vision)**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 보호, 증진되는 호주 사회

**위원회의 사명 (Mission)**

다음의 사항을 통해 인권에 관한 통솔력 제공

- 타 단체/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
- 정부와의 건설적 관계
- 지역사회와의 공명 관계
- 인권의 공동체적 인식 증진

능률적 조직으로서 다음의 사항에 헌신

- 목적의 조화와 일치
- 다원성과 창조성의 가치기준
- 우수성 추구

**위원회의 주요 기능 (Main Functions)**

- 총체적 인권에 대한 자각과 인식, 이해를 증진
- 민간·공공·지역 조직들의 인권에 대한 책임의식 증진
-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조정 노력, 권고 제공
-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법률·정책·활동의 검토 및 권고
- 위원회의 조정 기능 등 법률에 따른 특정 기능 수행

**위원회 전체의 의무 (Commission-wide Commitment)**

위원회는 토착민과 토러스해협 원주민을 위한 사회정의 실현에 무엇보다 헌신하며, 위원회의 전 업무에 걸쳐 목표와 전략, 사업 결정시 선주민의 인권을 고려한다.

**조직 전략 (Corporate Strategies)**

위원회의 사명을 달성하고 주요 기능을 수행하며 우선 의무를 추구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다음의 조직 전략에 종사한다.

- 인권증진과 차별철폐에 대한 모든 호주인의 책임을 강조
- 위원회가 관장하는 법률의 토대가 되는 원칙들과 인권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증진
- 정부와 지역사회에 인권침해를 알리고 권고를 제공
- 학교 교육 등 지역사회 인권교육을 위해 과학기술과 공공인본의 활용을 극대화
- 위원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역할을 지속
- 입법 및 기타 변화에 대해 민감히 반응
- 차별 및 인권침해 진정을 신속히 실효적으로 처리
-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알맞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신의 과학기술을 활용
- 위원회의 공공 이미지를 개발하고 독립적이고 공평한 조직으로서의 명성을 강화
- 위원회의 영향을 극대화하고 자원을 확대하기 위한 재정적 제휴 등 파트너십 개발

- 조정 및 중재 역할 개발
- 장애인 차별법의 기준 개발에 참여
- 단위별 연례 업무계획의 개발과 검토
- 아태국가인권기구포럼(APF) 회원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속하고 호주국제개발청(AusAID)과 국제연합(UN)의 기술적 지원 사업에 참여

### 조직 전략 1 : 타 단체/기관과의 협력

위원회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협력적으로 활동한다.

#### 세부전략

- 연방·주(州)·령(領) 정부 및 기관과의 협의
- 균등기회 및 반차별 단체/기관들과의 협력 사업
- 고용주, 기업연합, 노동조합, 지역 공동체 단체들과의 협의
- 법률전문가 및 법원과의 관계 구축 및 강화
-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 파트너십 구축

### 조직 전략 2 : 사업, 정책 및 연구

위원회는 자원을 제공, 강화하기 위한 활발한 연구정책 사업을 펼친다.

#### 세부전략

- 일련의 기준을 통한 사업계획 평가
- 위원회 전반에 걸쳐 정부 및 기타 외부 관계자와의 광범위한 협의
- 다음의 우선사항에 중점
  - 인권교육
  - 아동 및 청소년
  -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접근성 개선
  - 인종주의
- 위원회의 사업과 결과를 능률적으로 시장화

### 조직 전략 3 : 진정 처리

위원회는 진정 처리에 있어 모범사례를 만들고 지속한다.

#### 세부전략

- 진정 자료의 수집, 분석, 벤치마킹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처리시스템 유지
-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조정에 있어 시장성 있는 직원훈련계획 개발을 촉진
- 최선의 종합적인 진정처리 매뉴얼을 유지
- 진정절차 매뉴얼, 인권관련 법률 및 진정사건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 진정처리 담당 직원에 대해 업무배치 후 3개월 내에 철저한 훈련을 제공
- 위원회 진정처리 활동에 대한 의견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집단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벽지 등을 중심으로 지역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
- 온라인 진정제기, 진정 방법, 도우미 페이지 및 기타 정보 제공 등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터넷 활용
- 균등기회 및 반차별 단체/기관들과의 건설적·동반적 관계 유지
- 훈련, 보고, 기술적 이슈들에 대하여 국내외 진정처리 기관들과의 협력사업
- 위원회의 민원서비스현장에 충실하고 민원인 만족조사를 통한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민원인 만족도를 달성

### 조직 전략 4 : 교육과 홍보

위원회는 모든 호주인에 대하여 인권에 관한 효과적인 소통과 교육을 제공한다.

#### 세부전략

- 위원회의 기능과 정책을 널리 알리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언론·지역사회·정부와의 효과적인 소통 및 관계를 개발
- 정부, 기업, 지역사회에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위원회의 웹사이트를 개발, 유지
-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인권교육 모듈을 지속적으로 개발
- 이해관계자와의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메일링리스트 기술을 지속적으로 활용
- 학교, 교사, 교육기관과의 긴밀한 관계 수립
- 지역사회와 언론, 공공·민간 부문을 위한 일련의 정보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출판
- 인권상 수여 및 기타 공공 이벤트를 통하여 개인과 사회의 업적을 인정
- 장애인차별법 10주년을 지역사회와 기념하는 등 관련 사건의 기념일을 축하

### 조직 전략 5 : 공개 조사

위원회는 인권이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 세부전략

- 필요한 경우, 인권·차별·신주민의 사회정의에 관한 특정 이슈에 관한 조사 실시
- 출입국 구금시설의 아동에 대한 조사를 완료
- 1993년 정신질환 조사에 대한 후속 조사의 가능성 연구

### 조직 전략 6 : 조직 지원

위원회는 업무와 직원,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조직에 대한 능률적 지원 절차와 시스템을 유지한다.

#### 세부전략

- 공공활동의 가치와 행동수칙을 견지
- 일터에서 다원성의 원칙을 지지, 증진
- 가능한 자원과 정부정책 안에서 전반적 우선순위와 전략사항을 결정
- 위원회의 관련 이슈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
- 활동조건의 종합적 윤곽 제시와 생산성 증진을 위해 직원과의 업무적 합의를 유지
-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타 단체/기관으로부터의 재정지원을 모색
-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 및 자원 활용을 위해 노력
- 특히 출장 및 기록보관 관리에 관하여 일반 운영정책 및 지침을 마련
- 발생주의에 의한 월별 재정보고와 예측회계를 개발, 유지
- 정보기술 계획을 마련, 유지
- 위원회에 대한 공공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통신 및 과학기술을 평가
- 임대시설의 활용도를 평가하여 위원회를 위한 최선의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체결
- 기록보관 관리시스템을 재검토하고, 공유(Sharepoint)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하여 인쇄 서류의 처리 및 보관을 감소시키는 과학기술의 활용을 고려
- 최근의 테러경계 상황과 관련하여 위원회보안정책을 재검토
- 위원회의 공급계약과 물품조달체계를 재검토
- 프라이버시위원회 및 아태국가인권기구프로그램(APF)에 대한 능률적인 조직지원을 제공
- 호주국제개발청(AusAID) 및 유엔개발계획(UNDP)과의 계약 관계에 대한 관리

## 몽골 국가인권위원회

# 전략계획

(2004-2006)

“모든 이의 인권을 위한 실제적 이행의 확보”

### 서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활동을 시작한 이래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위원회는 인권을 보호·증진하고, 몽골의 헌법과 국내법, 몽골이 비준한 국제조약 등에 규정된 인권과 자유의 이행을 모니터한다는 위원회의 수임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여 왔다. 모든 이의 인권을 위한 실제적 이행의 확보를 위하여 인권보호라는 신성한 대의를 옹호하는 것이 위원회의 사명이다. 위원회는 모든 인권침해에 단호히 맞서고, 정당한 권리를 위한 인민의 투쟁을 촉진시키는 조건들을 창출하는 한편, 신뢰를 구축하고, 인권이슈에 대한 능률적, 효과적인 국제적, 지역적 협력을 발전시키면서, 국가기관·비정부기구·인론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인권교육과 인권증진의 질을 높이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어왔다.

위원회는 제1차 전략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준 주몽골 영국대사관, 몽골주재 캐나다기금, 뉴질랜드 정부, 국제노동기구(ILO) 방콕사무소,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에 감사할 표한다. 호주 인권과 균등기회 위원회, 뉴질랜드 국가위원회, 덴마크인권연구소, 인도 국가인권위원회, 아태국가인권기구포럼(APF) 사무국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독립적 기능을 지지하며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여 준 것에 대해 감사할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국가기관, 학자들이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의견과 비판을 통해 기여하여 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한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상호협력력을 돈독히 하는 데 경주할 것이다.

위원회는 제1차 전략계획(2001년-2003년)에 대한 평가, 각 기관의 의견과 제안, 국내 인권 및 자유의 상황에 대한 연구 분석 등을 바탕으로 제2차 전략계획(2004년-2006년)을 개발하여 왔다. 본 전략계획은 위원회의 자원·예산·수행능력 상의 제한에 한정되지 않는다. 본 전략계획의 여러 중요한 활동들은 위원회의 수행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UNDP/OHCHR 공동프로젝트의 틀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위원회는 또한 본 전략계획을 개발함에 있어 여타 재정지원 기관들과의 광범위한 협력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모든 활동에 있어 위원회는 법의 지배, 인권 및 정당한 이익의 보호, 개방성, 투명성, 정의와 독립성의 원칙들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다.

### 비전

모든 이의 인권을 위한 실제적 이행의 확보

### 사명

몽골 내 모든 이의 인권을 위한 실제적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이라는 신성한 대의를 옹호

### 목표

**[목표 1]**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인식하고 이를 위해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권에 대한 인식과 문화, 정신을 개발

**[목표 2]** 입법부, 행정부와 지방정부, 사법부와 사법집행기관들이 헌법과 국내법, 국제인권조약 상의 의무를 다하고 일상 업무에서 항상 인민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인권의 문화를 개발하며, 인권의 원칙들에 대한 민간부문의 준수를 증진

**[목표 3]** 비정부기구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효과적 협력과 이들의 인권 수행능력을 강화

**[목표 4]** 위원회가 그 비전과 사명, 수임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적 인권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이러한 위원회의 전문성이 공공부문, 시민사회, 일반대중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 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

**목표 1**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인식하고 이를 위해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권에 대한 인식과 문화, 정신을 개발

**세부목표 1.1** 대중의 인권 의식과 이해를 새로운 차원으로 고양, 진작

활동 1.1.1 대중의 인권 의식과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기적인 인권교육 및 인권증진 활동을 조직

활동 1.1.2 매분기마다 중요 인권이슈에 대한 대중강연을 조직

활동 1.1.3 인권이슈에 대한 대중용 홍보자료를 생산, 배포

활동 1.1.4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월간 행동계획을 매년 개발하고 이를 실행

활동 1.1.5 매분기마다 한 편 이상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연속물을 제작, 방송

활동 1.1.6 위원회의 연례 “인권보고서”에 대한 공청회 조직

활동 1.1.7 위원회 웹사이트 정보의 내용과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 활동 1.1.8. 인권에 관하여 일련의 지방단위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방송
- 활동 1.1.9. 아동의 권리 증진에 관한 라디오 드라마 "Undur Bosgo"를 4개 지방(아이막, aimags)에서 방송

**세부목표 1.2** 2004년 국가의회 및 지방의회 선거, 2005년 대통령 선거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이행을 모니터, 분석

- 활동 1.2.1. 선거운동 및 선거기간 동안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의 침해에 관한 진정을 접수하고 이를 조사
- 활동 1.2.2.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의 침해에 대한 연구 수행 및 평가
- 활동 1.2.3. 연구와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와 제안을 제시하고 그 정보를 관계기관 및 공무원에게 제공

**세부목표 1.3** 취약집단의 권리에 관한 연구, 조사 및 모니터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취약집단이 자신이 권리를 위해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

- 활동 1.3.1. 취약집단에 대한 사회적 보호에 관해 연구를 수행
- 활동 1.3.2. 타스탄(Tsaatan) 증족의 권리 실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개발하고 소규모 프로젝트를 수행
- 활동 1.3.3. 수도 내 3개의 게르(Ger) 가옥구역 주민들을 위해 법률구조센터를 설립

**세부목표 1.4** 인권이 모든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인권교육 교과과정 및 방법론의 개발을 지원

- 활동 1.4.1. 법과대학 강사들에게 인권이슈, 인권과정의 내용 및 교수법을 훈련
- 활동 1.4.2. 관련부처와 법과대학에 인권 교과과정 모델을 소개하기 위한 회의를 조직
- 활동 1.4.3. '법률교육 강화에 관한 소프로젝트'에 인권 교과과정 모델을 포함
- 활동 1.4.4. 의사·교사 훈련기관의 교과과정에 인권을 포함시키고, 관련부처, 학교, 대학,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인권 교과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재원을 모색
- 활동 1.4.5. 관련부처, 학교, 대학,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중등학교 사회교사들의 교수법 및 수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을 조직하기 위해 재원을 모색

**목표 2** 입법부, 행정부와 지방정부, 사법부와 사법집행기관들이 헌법과 국내법, 국제인권조약 상의 의무를 다하고 일상 업무에서 항상 인민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인권의 문화를 개발하며, 인권의 원칙들에 대한 민간부문의 준수를 증진

**세부목표 2.1** 의회에서 승인된 법률들이 인권의 기본원칙과 헌법적 개념,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범과 기준 및 절차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입법발의자, 정부부처, 실무그룹 등에 정기적으로 제안과 권고, 정보를 제공

- 활동 2.1.1.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들이 몽골이 가입한 국제조약들과 부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피해자 및 피의자의 권리보장을 개선하기 위해 권고
- 활동 2.1.2. 개인에 대한 간섭, 가택수색, 체포 등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에 의해 수행되는 신변수색의 모든 단계들이 사법기구의 허가를 통해서만 규율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관행 개선을 위한 훈련을 제공

**세부목표 2.2** 몽골이 가입한 국제조약들의 이행상황을 모니터하고 관련단체에 권고를 제공하며 이를 위해 국제적·지역적 단체들과 협력

- 활동 2.2.1. "몽골 내 여성인권의 실현을 위한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이행촉진"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하여 유엔여성발전기금(UNIFEM)과 협력
- 활동 2.2.2. 외무부와의 협력 하에, 국제인권조약 가입에 관한 제안서를 의회에 제출

**세부목표 2.3** 정부가 국제인권조약기구에 대한 정기보고의무를 준수하고 정부보고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 지지

- 활동 2.3.1.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정부보고서들을 수집하여 이를 자료집으로 편찬, 배포
- 활동 2.3.2. 정부공무원들의 보고서 작성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
- 활동 2.3.3. 정기보고의무가 있는 유엔협약들에 대한 6개의 훈련프로그램 마련

**세부목표 2.4** 형사절차에 있어 인권침해 및 고문 사건의 숫자 감소

- 활동 2.4.1. 경찰학교와의 협력 하에, 사건접수원 및 조사관들에 대하여 고문방지협약에 관한 훈련을 실시
- 활동 2.4.2. 고문 문제에 관한 공개조사 수행
- 활동 2.4.3. 고문에 관하여 대중용 팸플릿 제작, 배포
- 활동 2.4.4. 고문과 인권에 관한 서적 출판, 배포
- 활동 2.4.5. 사법집행기관의 업무수행평가 규칙들이 인권존중 및 법준수에 관한 평가기준들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들과 협력
- 활동 2.4.6. 구속 및 체포 허가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사들에 대하여 인권 및 고문방지협약에 관하여 훈련을 실시
- 활동 2.4.7. 검찰과 협력하여, 교도소 내 병동과 예심단계 구금시설의 병동에 대한 감독 시스템 마련
- 활동 2.4.8. 예심단계 구금시설과 구치소, 교도소에 대해 정기적 모니터링 수행
- 활동 2.4.9. 수형자 또는 피구금인이 감호소, 예심단계 구금시설, 구치소, 교도소 등에서 사망한 경우 위원회가 검찰청, 경찰청과 함께 공동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절차를 개발
- 활동 2.4.10. 사건접수와 조사의 단계에서 피의자와 피구금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 모니터링 체계 수립방안을 검토

**세부목표 2.5** 국내법과 국제인권조약의 기준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금시설들의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조직

활동 2.5.1. 예심단계 구금시설, 구치소, 교도소를 점검하여, 인권기준 및 법적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금시설의 개선과 개혁을 위해 정기적 활동을 수행

활동 2.5.2. 피의자에 대한 강요, 위협, 증언강제 등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예심단계 구금시설의 절차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절차들이 국제인권기준과 부합하도록 유도하는 활동을 수행

**세부목표 2.6** 사형제도 운영의 변화를 유도

활동 2.6.1. 사형제도 및 관련입법의 현황과 추세에 대한 연구를 수행

활동 2.6.2. 국제단체들과 협력하여, 판사들에게 “전 세계 사형제도 추이”를 훈련

활동 2.6.3. “인권과 사형제도”를 주제로 각 지방 판사들과 함께 원탁토론회를 조직하고 이러한 활동에 언론의 참석을 보장

활동 2.6.4. 여성과 60세 이상의 남성에 대한 사형을 금지하는 현 법률조항을 유지하는 한편,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항목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할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

활동 2.6.5. 사형집행을 연기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위해 관련 단체들과 협력

활동 2.6.6. 1994년 대통령령과 관련하여, 사형수의 요구 또는 위원회 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관련당국으로 하여금 고문 또는 여타의 인권침해 사건들을 조사하도록 하는 관례를 만들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

**세부목표 2.7** 공공부문의 인권의식 개선, 인권기준 준수 확대, 공무원의 책무성 증대를 유도

활동 2.7.1. 사법체계에 있어 국제인권조약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절차에 따라 국제조약에 대한 공공출판을 지원

활동 2.7.2. 인신매매를 다루는 사법집행기관 공무원들에 대한 훈련

활동 2.7.3. 행정기관의 진정담당 관리들을 위해 인권관련 진정처리에 있어 조정 또는 중재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대안적 분쟁해결”에 관한 지침을 마련

활동 2.7.4.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관한 연구를 수행

활동 2.7.5. 의사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권리에 관한 연구를 수행

활동 2.7.6.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조사와 진정결과를 근거로 법원에 배상청구 제출

활동 2.7.7. 지방세 수납계획의 인권적 측면에 대한 연구 수행

활동 2.7.8. 국가의회 및 지방의회 선거이후 불법적으로 공무원들을 대량 해고하는 행위를 철폐하기 위한 활동을 조직. 공무원이 어떤 단체에 가입했다는 것을 이유로 억압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헌법 제16조 10항에 대한 위반임.

활동 2.7.9. “부패와 인권”에 대한 훈련과 세미나를 조직

**세부목표 2.8** 법률가들이 일상 업무에서 기본적 인권원칙들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들의 인권의식 개선을 유도

활동 2.8.1. 국가법률센터와 협력하여, 판사, 검사, 사건접수원, 조사관, 법원결정 집행관을 포함한 법률가들에 대해 훈련을 실시

활동 2.8.2. 인권침해사건 처리시 조정과 중재의 활용하도록 판사, 검사, 조사관, 변호사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

활동 2.8.3. 중앙사법기관들과 향후의 협력논의를 위한 회의를 조직

**세부목표 2.9** 국가인권행동계획(NAP)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NAP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활동계획이 개발될 예정임)

**세부목표 2.10** 민간부문 특히 합작회사들로 하여금 인권에 대한 의무를 인식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

활동 2.10.1. 고용에 있어 비차별 원칙의 이행에 관한 연구를 수행

활동 2.10.2. 의류제조업 및 광업에 종사하는 고용주들에게 노동권과 고용주의 책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몽골고용주협회 및 몽골노동조합연맹과 협력

활동 2.10.3. 관련 감독기관 및 노동조합들과 연계하여, 합작회사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합작회사의 노동조건에 관한 모니터링을 지속

**목표 3** 비정부기구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효과적 협력과 이들의 인권 수행능력을 강화

**세부목표 3.1** 현대적 방법들을 활용하며 공동으로 인권훈련, 홍보, 연구조사를 수행

활동 3.1.1. 여성의 권리, 아동의 권리, 사형제도,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신체적 자유에 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인권단체들과 공동 연구조사를 수행하고 협력 사업을 전개

활동 3.1.2. 인권침해사건 조사, 조정과 중재, 인권이슈에 대한 공청회 조직방법 등에 관하여 인권활동가들에게 훈련을 제공

활동 3.1.3. 인권의 실질적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단체의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계별 훈련을 제공

활동 3.1.4. 인권 훈련자(강사)들의 네트워크 구축

활동 3.1.5. 법과대학생, 강사, 학자, 연구자들을 위한 인권논문경연대회 개최

활동 3.1.6. 매년 특정 인권주제에 관해 법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법정대회 개최

활동 3.1.7. 스웨덴국제개발협력청(SIDA)의 지원 하에, 몽골변호사협회에 수행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제공

활동 3.1.8. 법률구조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몽골변호사협회와 협력

활동 3.1.9. 두세 개 주요 인권이슈에 대한 캠페인을 기획하고 관련 홍보활동을 조직

**세부목표 3.2** 위원회 자문위원단의 효율성과 수행능력 개선

활동 3.2.1. 자문위원단의 구성과 규정을 보완하고 활동을 조직화

활동 3.2.2. 자문위원단에 대한 업무지원 제공

**세부목표 3.3.** 인권이슈에 민감히 반응할 수 있도록 인본의 역량을 제고하고, 인권이슈를 보도, 방송하도록 인본을 독려

활동 3.3.1. 인권이슈의 보도와 방송에 관한 인본의 지침을 개발하고, 이러한 지침에 관하여 인본과 함께 훈련이나 원탁토론회를 조직

활동 3.3.2. 인권이슈에 대한 인본학과 학생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캠페인과 훈련을 실시하고 이들에게 인권에 대한 이해와 기술을 제공

활동 3.3.3. 인권관련 논문과 기사의 보도를 증진함으로써 주요 인권이슈에 대한 인본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조직

활동 3.3.4.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는 인본상을 수여하고 시상식의 명성을 홍보, 증진

**목표 4** 위원회가 그 비전과 사명, 수임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적 인권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이러한 위원회의 전문성이 공공부문, 시민사회, 일반대중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

**세부목표 4.1** 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위원의 숫자와 인적 다양성을 증대

활동 4.1.1.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

활동 4.1.2. 직원의 숫자와 위원회 예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제안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

활동 4.1.3. 위원회가 자체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관해 연구하여 관련 당국에 의견을 제출

**세부목표 4.2** 연례 인권보고서, 인권관련 연구조사의 결과와 제안에 바탕을 둔 위원회의 권고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관례를 확립

활동 4.2.1. 위원회 권고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공무원과 개인들이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부과

활동 4.2.2. 위원회 권고와 그 이행상황을 인본을 통해 정기적으로 홍보

**세부목표 4.3** 각 지방(아이막, aimags)에 대한 위원회의 접근성 개선

활동 4.3.1. 지역의 인권협의회와 협력하여, 인권설명회를 개최

활동 4.3.2. 위원회의 지역대표들에게 인권설명회 개최, 인권훈련프로그램 조직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인권설명회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

활동 4.3.3. 지역의 인권협의회를 위한 훈련과 워크숍 조직

활동 4.3.4. 위원회의 지역대표들을 위해 지침 마련

**세부목표 4.4** 위원회 활동의 기동성을 높이고 몽골의 시도적 인권기구에 걸맞은 위원회의 위상과 수행능력을 강화

활동 4.4.1. 인권정보자료센터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자원을 보급

활동 4.4.2. 스웨덴국제개발협력청(SIDA)과 유엔수행능력개발프로젝트의 지원 하에, 도서관 사서와 문헌정보담당관에 대한 훈련을 제공

활동 4.4.3. 특정 인권에 대한 각 직원의 전문화 시스템을 마련

활동 4.4.4. 위원회의 진정처리시스템을 더욱 개선하고 진정사건 데이터베이스를 개발

활동 4.4.5. 인터넷 등 필수적인 위원회의 시설들을 개선

활동 4.4.6. 아태국가인권기구포럼(APF)과 협력하여, 위원회 직원과 기타 관련기관의 직원에 대해 인권조사에 관한 훈련을 실시

활동 4.4.7. 위원회의 활동을 홍보하는 분기별 소식지를 제작, 배포

활동 4.4.8. "국가인권위원회-3년의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책자 제작

**세부목표 4.5.** 위원회의 활동, 기술협력 기회 등을 위하여 재정마련 대안책을 확보

활동 4.5.1.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후원기관들에게 정기적으로 신속히 제공

활동 4.5.2. 프로젝트 계획서 작성, 프로젝트의 이행과 보고방법 등에 관하여 직원들에게 훈련을 실시

활동 4.5.3. 국제후원기관들, 국내외 파트너들과 효과적으로 협력

활동 4.5.4. 몽골에 지역인권훈련센터 설립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재정지원 단체들과 접촉

활동 4.5.5. 국내 후원기관들에게 본 전략계획에 의해 수행되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을 조직

**세부목표 4.6** 아태국가인권기구포럼(APF) 제10차 연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

활동 4.6.1. 제10차 연례회의의 일정과 참여에 관해 의회와 정부에 계획서를 제출

활동 4.6.2. 제10차 연례회의의 개최 준비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

활동 4.6.3. 제10차 연례회의와 관련하여 홍보활동을 조직

활동 4.6.4. 몽골에 지역인권훈련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참석자를 위한 특별 활동을 조직

**세부목표 4.7** 국제인권기구들과의 협력을 진작

활동 4.7.1. 유엔아동기금(UNICEF)과의 양해각서에 따른 행동계획을 개발, 이행

활동 4.7.2. APF 사무국의 지원 하에, 1년 동안 유엔봉사단(UNV) 유치

- 활동 4.7.3.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연례 활동보고서와 재정보고서를 제출
- 활동 4.7.4. APF 연례회의에 대표를 파견
- 활동 4.7.5. APF 회원들과 호혜적 교류를 모색하고, 호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국가인권 위원회와 협력을 지속

**세부목표 4.8 위원 및 직원들의 수행능력과 업무조건 향상**

- 활동 4.8.1. 분기별 지원훈련계획에 따라, 매월 당면 인권주제에 관해 위원회 전체직원 교육을 실시
- 활동 4.8.2. 직원훈련 필요평가, 직원훈련개발프로그램을 매년 업데이트
- 활동 4.8.3. 캐나다 인권재단이 주최하는 제25차, 제26차, 제27차 국제인권훈련프로그램에 직원을 파견
- 활동 4.8.4. 핀란드에서 개최되는 인권과정에 위원과 직원을 파견
- 활동 4.8.5. 여타의 지역적, 국제적 단위의 인권훈련과 워크숍에 적절한 대표를 파견하고, 직원의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환직원 프로그램을 조직
- 활동 4.8.6. 전략계획과 연중업무계획에 따라 각 직원의 업무사항이 반영되도록 직무내용설명서를 수정작성
- 활동 4.8.7. 위원과 직원의 사회적 요구를 판단하기 위해 설문을 실시하고, 이들의 사회적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발전기금과 사회프로그램을 마련
- 활동 4.8.8. 위원과 직원의 자유 시간을 위해 여가활동을 조직
- 활동 4.8.9. 위원과 직원을 위해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



# 업무전략기획팀 두번째 회의 결과보고

## 1. 회의 개요

- 일 시 : 2005. 9. 23.(금) 오후 4시반~6시반 (회의후 위원장 주최 만찬)
- 참석자(10명)
  - 팀 장 : 박찬운 정책국장
  - 외부위원 : 김종서, 배경내, 이창수, 장주영, 조효제 위원
  - 내부팀원 : 심상돈 과장, 사무관 이수연, 강명숙, 임송(간사)
- 회의안건
  - 발전기획단 설립취지 및 업무전략기획팀 임무 소개
  - 위원회 연간업무계획 체계 및 내용(2002-2005) 검토
  - 외부 위원 제안사항
  - 기타 논의사항(차기회의 일정 및 안건 등)

## 2. 회의 진행방식

- 팀장과 간사가 각각 발전기획단 설립취지 및 업무전략 기획팀 임무, 위원회 연간업무계획(2002-2005) 분석내용을 설명한 후,
- 팀장 사회로 위원회 업무전략 계획(Strategic Plan)의 성격, 체계, 포함범위, 작업방식 등에 대하여 논의

## 3. 주요 논의 사항

### 가. 업무전략 계획 작성 목적 관련

- 업무전략 기획팀이 작성하고자 하는 "전략계획(Strategic Plan)"이

위원회의 장기 전략계획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2기 위원회의 전략계획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음(김종서, 이창수 위원)

⇒ 2기 위원회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임. 현 2기 위원회는 최영도 위원장이 취임 시 제시한 “자유권 중심으로부터 사회권 중심”, “침해된 인권에 대한 구제로부터 인권침해 예방으로”,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강화”의 기초를 계승하였다고 볼 수 있음. 우리 팀이 작성하고자 하는 전략계획은 이러한 기초를 승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임.(박찬운 팀장)

#### 나. 업무전략 계획 포함 범위 관련

○ 전략계획 작성의 의도가 “2기 위원회의 방향성 제시”라는 것과 체계(비전-미션-Goal-추진전략-세부사업)에 관해서는 이해가 되었음. 문제는 2기 위원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어느 수준까지 구체화 하여 제시할 것인가?” 라는 것임. 2기 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상세한 사업내용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장주영, 이창수 위원)

⇒ 위원회가 추진할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위원회법상 의무의 이행, 확보된 예산, 가용인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직의 하부단위로부터 나오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우리 팀이 작성할 전략계획 문건은 2기 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임.(심상돈 과장)

⇒ 세부사업내용(Action plan)을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하여 제시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보는데, 연간 업무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추상적인 원칙을 제공하는 수준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함.(박찬운 팀장)

#### 다. 팀 작업방식 관련

○ 팀 작업방식은 3가지 정도가 있을 것임. 첫째, 내부팀원들이 초안을 작성하고 외부위원들로부터 평가를 받아 보완하는 방식. 둘째, 팀 회의에서 Issue별로 토론을 하고, 이를 내부팀원들이 정리하여 제시하는 방식. 셋째, 큰 주제를 놓고 난상토론을 하고, 내부팀원들이 정리한 후 재 토론 과정을 거쳐 발전시키는 방식. 핵심은 누가 Initiation을 가지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함.(박찬운 팀장)

⇒ 실효성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우선 1기 위원회 활동 중에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한 평가(예를 들면, 교정시설 쪽에 역량을 과다 투입 등)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이는 1기 위원회를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2기 위원회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함.(장주영 위원)

⇒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번 모임에서 위원회가 발전계획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1기 위원회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음. 하지만 오늘 회의 자료상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음. 위원회는 1기에 대한 분야별 내부 평가를 제시하여야 함.(배경내 위원)

⇒ 초안 작성을 굳이 내부 팀의 역할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임. 내부 팀이 초안을 작성하되, 외부 위원들도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 초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장주영 위원)

⇒ 차기 회의 개최 전까지 내부 팀이 초안을 작성하여 외부 위원들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외부 위원들도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와서 차기 회의에서 논의한 후 통합된 초안을 만들어 이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음.(박찬운 팀장)

## 라. 기타

- 기획단에 제시한 작업 시간계획을 보면, 기획단이 전략계획안을 작성한 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럴 경우 인권위원들이 전략계획 작성 단계에서는 논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배경내 위원)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번 전원위원회에서 격론이 있었고, 사무처가 안을 만들어 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고 생각함. 하지만, 전략계획 작성과정은 인권위원과 내부 직원 모두에게 진행과정을 가능한 한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인권위원들이 사전에 논의 진행과정을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명하도록 하겠음.(박찬운 팀장)

- 조직 마다 전략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유행인 것 같음. 하지만 이번 작업이 한때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어서는 안 됨. 실질적으로 조직에 도움이 되는 전략계획이 작성되어야 함.(조효제 위원)

## 4. 향후 조치계획

- 내부 팀 초안 작성 : 10.5~6경까지 완료
  - 초안 작성을 위한 내부 팀 회의(2~3회)
- 작성된 초안을 외부위원들께 송부 : 10.8까지
- 차기 회의 : 10. 12.(수), 10:00~14:00 (도시락 준비)
  - 내부 팀 초안과 외부위원 제안사항을 가지고 논의 후, 통합된 초안을 만들고, 10월말까지 이를 발전시킴.

회의자료

**발전기획단 업무전략기획팀  
3차 회의**

**2005. 10. 12. (수)**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단 업무전략기획팀**

## 업무전략기획팀 3차 회의

1. 회의 일시 : 2005. 10. 12. 10:00 ~ 14:00
2. 회의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2층 회의실
3. 참석 대상
  - 팀 장 : 박찬운 정책국장
  - 외부위원(5명) : 김종서, 조효제, 장주영, 이창수, 배경내 위원
  - 내부팀원(4명) : 심상돈 과장, 사무관 이수연, 강명숙, 임송(간사)
4. 회의 안건
  - 내부팀이 작성한 위원회 전략계획(2006-2008) 초안 검토
  - 외부위원이 작성한 의견서에 대한 논의
  - 기타 논의사항(배경내 위원 제안 사항, 차기 회의 일정 등)

※ 점심은 도시락 준비

## 안건1 : 내부팀 작성 전략계획 초안 검토

### 1. 전략계획 초안 작성 과정 및 체계

○ 내부팀원 4명이 각각 “인권정책”, “인권침해 조사·구제”, “차별 조사·구제”, “인권교육” 4개 분야로 나누어 초안을 작성한 후, “인권침해”와 “차별”을 “조사·구제”로 통합

○ 업무전략계획은 최종적으로 현재 발전기획단 내 다른 2개 팀(위상 강화 기획팀, 역량강화 기획팀)의 연구 성과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괄하게 될 것임.

2 - 현재 작업 중인 우리 팀의 검토사항들은 2기 위원회가 추구하는 활동의 내용(프로그램)이며, 나머지 팀들이 검토하는 사항들은 우리 팀이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관리적 (Management) 성격을 갖는 내용들이 될 것임.

○ 내부팀이 작성한 전략계획 초안은 3개 분야에 대하여 『목표(goal)-세부목표(objectives)-추진전략(strategies)』 체계로 기술되어 있음.

- 이중 “분야별 세부목표”는 위원회가 향후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들로 전략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임. (각 국 소속 내부팀원들이 소속 직원들과 협의하여 작성)

- 목표는 세부목표를 통합하는 간결하고 함축적인 내용으로 하위 내용(세부목표, 추진전략)이 확정된 후, 작성할 계획임.
  - 추진전략은 세부목표와 향후 수립할 연간 세부사업계획의 중간단계로, 너무 추상적이면 연간 세부사업계획 작성 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게 되고, 너무 세부적이면 전략계획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에 구체화 정도를 놓고 고민이 많았음. 위원회 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으되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 정도로 개념화·추상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2기 위원회의 비전, 미션 역시 분야별 전략계획 내용을 확정된 후 작성할 계획임

## 2. 분야별 세부목표 선정 이유

### 【인권정책 분야】

현재 위원회가 작성중인 NAP 권고안의 체계를 따랐음. 이는 작성하는 전략계획이 위원회 차원의 NAP라는 생각에 근거한 것임.

- NAP 권고안 2부는 “취약계층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3부는 “인권신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인권협력체제 구축 포함)”으로 구성되어있음.



- 초안은, NAP 권고안 체계에 따라,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 보호 및 신장”,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 “국제 인권기구 및 국내외 비정부기구와의 협력체제 강화”, 및 “인권위의 역량강화”를 세부목표로 삼았음.

\* 세부목표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에 “국제적 수준”을 삽입한 것은 위원회가 그 업무에 있어서 국제인권기준을 적극 적용할 경우, 인권보호를 위한 추가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존의 법적 기준 하에서 적절한 보호를 제공받지 못하던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 【조사·구제분야】

조사·구제 분야는 침해/차별 공통사항, 인권침해 조사·구제, “차별 조사·구제”로 나누어 기술하였음. 이는 조사·구제 활동에 공통되는 사항이 있는가 하면, 침해 혹은 차별 조사·구제 각각에 고유한 세부목표가 있기 때문임

- 공통사항으로는, “진정인 만족도 제고”, “사전·예방적 활동 강화”, “사건처리 체계 정비”를 선정하였음. 이는 그동안의 위원회 활동을 돌아볼 때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임
- 침해 조사·구제 분야의 세부목표로는 “분야별 특성에 따른 전략적 접근”, “직권·방문 조사 활성화”를 선정했는데,
  - 전략적 접근은, 1기 위원회가 역량을 집중했던 분야(검·경, 교정

분야)는 어느 정도 조사·구제의 기틀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내용(관행이나 제도의 개선 등)에의 개입이 가능한 반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분야(군, 다수인 보호시설)는 인권개선을 위한 조사·구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 “직권·방문조사 활성화”는 그동안 위원회 내·외부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던 사항임. 위원회 접근 가능성이 낮은 인권 취약계층의 경우, 진정사건을 통한 조사·구제만으로는 인권개선 효과가 낮을 수 밖에 없고, 위원회가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분야가 바로 그러한 분야이기 때문임.

[취약 분야] · 취약분야 내용도 잘 특히 위험.

#### 【인권 교육 분야】

인권교육분야 세부사업목표는, NAP 권고안 내용, 관련 통계, UN인권교육 10개년 계획, 세계 인권교육 프로그램, 인권교육 우선집중 대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 “인권교육 법제화, 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추진”은 인권교육법 제정 및 인권교육원 설립, 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인권교육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인권교육 제도화”와 “체계적인 접근”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임.

- “학교교육 과정에 인권교육 포함”, “모든 공무원에게 인권교육 의무화”는 학생과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교육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임.
  
- “시민·지역사회 인권역량 강화 지원”은 시민·지역사회의 인권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 관련 단체와의 인권교육 역할 분담과 인권 캠페인 실시 등 직접 시민을 상대로 한 인권의식 제고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임.

### 3. 논의 사항

- 가. 분야별 세부목표의 적정성 여부 및 추가·삭제 의견
- 나. 세부목표 vs. 추진전략의 적절성 여부
- 다. 기타 관련 사항

**안건2 : 외부 위원 의견서 검토**

**안건3 : 기타 논의 사항(배경내 위원 제안 사항 등)**

<붙임 자료>

1. 내부팀 작성 전략계획 초안
2. 3개국(호주, 아일랜드, 몽고) 업무전략계획
3. 국가인권위원회 업무계획 분석자료
4. 2기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민간초청 워크숍 제안서  
(배경내 위원 제안)

## <붙임 1> 내부팀 작성 전략계획 초안

### 인권정책분야

▣ 목표(Goal):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 신장, 국제적 수준의 인권 인프라 구축

#### ▣ 세부목표(Objectives)

1.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보호 및 신장
2.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
3. 국제인권기구 및 국내외 비정부기구와의 협력체제 강화
4. 인권위의 역량강화

#### ▣ 추진전략(Strategies)

세부목표 1: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보호 및 신장

##### 추진전략

- 1.1. 사회권 연구 역량의 강화
- 1.2. 선택과 집중 원칙에 의한 특정 영역 사회권 분야의 정책개발
- 1.3. 사회권에 맞추어진 인권상황실태조사와 그 활용

세부목표 2: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

##### 추진전략

- 2.1. 정부의 인권NAP의 수립과 그 이행과정의 모니터링 및 적극적 자문
- 2.2.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소개 강화
- 2.3.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법제개선
- 2.4. 중·단기 과제로서의 인권제도의 선택과 그에 맞는 대책 강구
- 2.5. 관련기관과의 활발한 정책 협의
- 2.6. 인권침해 가능 기관의 관행 개선을 위한 인권보호지침(예: 미란다 원칙 고지 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사초기 단계의 인권보호지침” 등)의 개발과 보급

세부목표 3: 국제인권기구 및 국내외 비정부기구와의 협력 체제 강화

추진전략

- 3.1. 아시아 지역에서의 선도적 국가인권기구로서 협력 활동 강화
- 3.2. 국제인권기구와의 상시적 협력체제
- 3.3. 국내외 비정부기구와의 협력 체제의 정비 및 강화

세부목표 4: 인권위의 역량강화

- 4.1. 인권위 구성원을 위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의 설치
- 4.2. 연구모임 및 학습 동아리 운영
- 4.3. 인권연구기관과의 협력체제 강화
- 4.4. 인권전문가들에 대한 과감한 문호 개방
- 4.5. 인권자료의 효율적인 수집과 활용 극대화

## 조사구제 분야

### ▣ 목표(Goal):

### ▣ 세부목표(Objectives)

#### <조사구제 공통>

1. 진정한 만족도 제고
2. 사전·예방적 활동 강화
3. 사건처리 체계 정비

#### <인권침해 조사구제 분야>

4. 분야별 특성에 따른 전략적 접근
5. 직권·방문조사 활성화

#### <차별 조사구제 분야>

6. 효과적인 차별시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7. 차별시정을 위한 전문성 강화

### ▣ 추진전략(Strategies)

#### 세부목표 1: 진정한 만족도 제고

##### 추진전략

- 1.1. 진정처리 절차 개선을 통한 진정처리 지연 방지
- 1.2. 현장 해결형 사건처리 방식 지향
- 1.3. 진정 접수 및 처리과정 인터넷 안내 시스템 개발·제공
- 1.4. 사건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진정한 만족도 평가시스템 개발·실시

#### 세부목표 2: 사전·예방적 활동 강화

##### 추진전략

- 2.1. 연도별 중점 사전·예방적 활동분야 선정·공개 ✓

2.1. 인권교육·홍보 등을 통한 인권침해 예방활동 강화

2.1.1. 조사대상 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2.1.2. 업무유관 기관/단체와의 실무차원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2.1.3. 대국민 홍보강화(공익광고 실시, 뉴스레터 발행 등)

세부목표 3: 사건처리 체계 정비

추진전략

3.1. 지속적인 사건처리 절차 개선

3.2. 사건처리 매뉴얼 작성·유지

3.2. 위원회 특성에 맞는 인권 친화적인 조사절차 개발·실시

세부목표 4: 분야별 특성에 따른 전략적 접근

추진전략

4.1. 검·경, 교정 등의 분야는 개별진정사건 처리와 병행하여 관행·제도 개선에 주력

4.1.1. 1단계: 비인권적 관행 및 태도의 개선(반말, 폭언, 비하발언 등)

4.1.2. 2단계: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제도의 개선(긴급체포, 지명수배, 불심건문, 장구사용, 징벌 등)

4.1.3. 3단계: 구금·보호시설 환경개선(의료시설, 징벌방, 식당, 목욕시설, 화장실 등)

4.2. 군, 다수인보호시설 등의 분야는 인권개선 기반 조성에 주력

4.2.1. 병영문화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및 정책과제 개발

4.2.2.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인권상황실태 조사 및 정책과제 개발 ✓

4.2.3. 진정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



세부목표 5: 직권·방문조사 활성화

추진전략

- 5.1. 인권취약 분야(예: 미신고 사회복지 시설, 병영시설, 쉼터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직권·방문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 5.2. 연도별로 분야별 직권·방문조사 계획을 별도로 수립·운영
- ※ 인권위 접근성이 부족한 계층·집단에 대한 직권·방문조사를 우선 실시

세부목표 6: 효과적인 차별시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추진전략

- 6.1. 차별시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 근거로서의 차별금지법 제정추진
- 6.2. 인권위법상 명시되어 있는 19개 차별사유 및 영역별 판단기준 정립
- 6.3. 장애, 성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으로 차별심의 기능 보장
- 6.4. 조정위원회 구성 및 실질적 활용으로 피해자 구제방법 다양화
- 6.5. 차별행위 피해자에 대한 소송 지원체계 구축

세부목표 7: 차별시정을 위한 전문성 강화

추진전략

- 7.1. 조사관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
  - 7.1.1. 조사관 수준별, 차별 사유 및 영역별로 세분화된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개발
  - 7.1.2. 조사관의 교육 이수율 제도화
- 7.2. 다양한 차별 사유 및 영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7.2.1. 차별 사건 판단을 위한 자문그룹으로 활용
  - 7.2.2. 위원회 추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현장성 있는 정보 취득

## 인권교육 분야

▣ 목표(Goal): 인권교육 활성화

▣ 세부목표(Objectives)

1. 인권교육 법제화, 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추진
2. 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 포함
3. 모든 공무원에게 인권교육 의무화
4. 시민·지역사회 인권 역량 강화 지원

▣ 추진전략(Strategies)

세부목표 1: 인권교육 법제화, 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추진

추진전략

- 1.1. 인권교육법 제정 및 인권교육원 설립
- 1.2. 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
- 1.3. 인권교육 협의 및 이행 모니터링
- 1.4. 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연구기반 조성
- 1.5. 인권교육자 협의체 및 네트워크 구축(인권교육 전문가 양성, 풀 구성 및 운영, 재교육)

세부목표 2: 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 포함

추진전략

- 2.1. 인권교육과정 수립
- 2.2. 인권교육 교재 개발 보급 및 활용
- 2.3. 교사 연수 및 인권연구학교 운영
- 2.4. 친인권적 학교환경 조성 캠페인
- 2.5. 아동·청소년 인권 감수성 증진 행사 및 지원

세부목표 3: 모든 공무원에게 인권교육 의무화

추진전략

- 3.1. 공공분야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를 위한 협의 강화
- 3.2. 공공분야 인권교재 개발
- 3.3. 공무원 인권 직무 연수과정 개설 및 운영
- 3.4. 우선 대상(군대) 인권교육 집중 지원
- 3.5. 인권교육 모니터링 및 촉진

세부목표 4: 시민사회 인권 역량 강화 지원

추진전략

- 4.1. 언론인, 기업, 다수인 시설종사자 등 인권교육 우선 대상자에게 교육 실시
- 4.2. 인권 시민·지역단체 활동가 인권교육 지원
- 4.3. 인권옹호를 위한 콘텐츠 개발·제공
- 4.4. 인권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실시
- 4.5. 인권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 ✓

# 호주 인권과 균등위원회 조직전략계획

구분	Vision/Mission/Main Functions	Corporate Strategies	Strategies
인권정책	<p><b>위원회의 Vision</b> 모든사람의 인권이 존중, 보호, 증진되는 호주사회</p> <p><b>위원회의 Mission</b> 다음 사항을 통해 인권에 관한 통솔력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 단체/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li> <li>-정부와의 건설적 관계</li> <li>-지역사회와의 공명관계</li> <li>-인권의 공동체적 인식 증진</li> </ul> <p>능률적 조직으로서 다음사항에 헌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체적 인권에 대한 자각과 인식, 이해를 증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법 및 기타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li> <li>-장애인 차별법의 기준개발에 참여</li> <li>-단위별 연례 업무계획의 개발과 검토</li> </ul>	<p><b>조직전략 2: 사업, 정책 및 연구</b> 위원회는 자원을 제공, 강화하기 위한 활발한 연구정책 사업을 펼친다</p> <p><b>세부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련의 기준을 통한 사업계획 평가</li> <li>-위원회 전반에 걸쳐 정부 및 기타 외부관계자와의 광범위한 협의</li> <li>-다음의 우선사항에 중점(인권교육, 아동 및 청소년,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접근성 개선, 인종주의)</li> <li>-위원회 사업과 결과를 능률적으로 시장화</li> </ul> <p><b>조직전략 5: 공개조사</b> 위원회는 인권이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p> <p><b>세부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요한 경우, 인권차별선주민의 정의에 관한 특정이슈에 관한 조사 실시</li> <li>-출입국 구금시설의 아동에 대한 조사를 완료</li> <li>-1993년 정신질환 조사에 대한 후속조사의 가능성 연구</li> </ul>
조사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원성과 창조성의 가치기준</li> <li>-우수성 추구</li> </ul> <p><b>위원회의 주요기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체적인 인권에 대한 자각과 인식, 이해를 증진</li> <li>-민간, 공공, 지역 조직들의 인권에 대한 책임의식 증진</li> <li>-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조정노력, 권고 제공</li> <li>-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법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와 지역사회에 인권침해를 알리고 권고를 제공</li> <li>-차별 및 인권침해 진정을 신속히 실효적으로 처리</li> <li>-조정 및 중재역할 개발</li> </ul>	<p><b>조직전략3: 진정처리</b> 위원회는 진정처리에 있어 모범사례를 만들고 지속한다.</p> <p><b>세부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정자료의 수집, 분석, 벤치마킹을 촉진하기 위한 DB 및 처리시스템 유지</li> <li>-진정조사 및 조정에 있어 시장성있는 직원훈련계획 개발 촉진</li> <li>-최신의 종합적인 진정절차 매뉴얼 유지</li> <li>-진정처리 담당직원에 대해 업무배치 후 3개월 내에 철저한 훈련 제공</li> <li>-취약집단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역 교육 프로그램 수행</li> <li>-균등기회 및 반차별 단체/기관들과의 건설적·동반적 관계 유지</li> <li>-국내외 진정처리 기관들과의 협력사업</li> <li>-민원서비스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민원인 만족도 달성</li> </ul>
교육/협력	<p>정책, 활동의 검토 및 권고</p> <p>위원회의 조정 기능 등 법률에 따른 특정기능 수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권증진과 차별철폐에 대한 모든 호주인의 책임을 강조</li> <li>-위원회가 관장하는 법률의 토대가 되는 원칙과 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증진</li> <li>-학교교육 등 지역사회에 인권교육을 위해 과학기술과 공공언론의 활용을 극대화</li> </ul>	<p><b>조직전략 1: 타 단체/기관과의 협력</b> 위원회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협력적으로 활동한다.</p> <p><b>세부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방·주·령 정부 및 기관과의 협의</li> <li>-균등기회 및 반차별 단체/기관들과의 협력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주, 기업연합, 노동조합, 지역공동체 단체들과의 협의</li> <li>·법을 전문가 및 법원과의 관계구축 및 강화</li> <li>·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 파트너십 구축</li> </ul> <p><b>조직전략4: 교육과 홍보</b></p> <p>위원회는 모든 호주인에 대하여 인권에 관한 효과적인 소통과 교육을 제공한다.</p> <p><b>세부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언론·지역사회·정부와의 효과적인 소통 및 관계 개발</li> <li>·정부·기업·지역사회에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위원회 웹사이트를 개발, 유지</li> <li>·교사와 학생을 위해 온라인 인권교육 모듈을 지속적으로 개발</li> <li>·이해관계자와의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메일링리스트 활용</li> <li>·일련의 정보자료 개발·출판</li> <li>·인권상 수여 및 공공이벤트를 통하여 개인과 지역사회의 업적인정</li> <li>·장애인차별법 10주년 기념식 등 기념일 축하</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원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역할지속</li> <li>·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알맞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신의 과학기술 활용</li> <li>·위원회의 공공 이미지를 개발하고 독립적이고 공평한 조직으로서의 명성을 강화</li> <li>·위원회의 영향을 극대화하고 자원을 확대하기 위한 재정적 제휴 등 파트너십 개발</li> <li>·APF 회원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속하고 호주국제개발청과 UN의 기술지원사업에 참여</li> </ul>	<p><b>조직전략 6: 조직지원</b></p> <p>위원회는 업무와 직원,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조직에 대한 능률적 지원절차와 시스템을 유지한다.</p> <p><b>세부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활동의 가치와 행동수칙 견지</li> <li>·일터에서 다원성의 원칙을 지지, 증진</li> <li>·가능한 자원과 정부정책 안에서 전반적 우선순위와 전략사항 결정</li> <li>·위원회 관련 이슈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조언 제공</li> <li>·활동조건의 종합적 윤곽 제시와 생산성 증진을 위해 직원과의 업무적 합의 유지</li> <li>·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타 단체/기관으로부터의 재정지원 모색</li> <li>·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수행 및 자원 활용을 위해 노력(특히 출장 및 기록보관 관리에 관한 운영정책 및 지침 마련)</li> <li>·발생주의에 의한 월별 재정보고와 예측회계 개발, 유지</li> <li>·정보기술 계획을 마련, 유지</li> <li>·위원회에 대한 공공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통신 및 과학기술 평가</li> <li>·효율적인 임대계약, 인쇄서류의 처리 등을 위해 과학기술 활용, 보안정책 재검토, 물품조달체계 개선 등</li> <li>·APF 등에 대한 능률적인 조직지원</li> <li>·UNDP 와의 계약관계에 대한 관리</li> </ul>

# 몽골 인권위원회 조직전략계획

Vision/Mission	위원회의 목표	세부목표	구분
<p><b>위원회의 Vision</b> 모든사람의 인권을 위한 실제적 이행의 확보</p> <p><b>위원회의 Mission</b> 몽골 내 모든 이의 인권을 위한 실제적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이라는 신성한 대의를 옹호</p>	<p><b>목표 1</b>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인식하고 이를 위해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권에 대한 인식과 문화, 정신을 개발</p> <p><b>목표 2</b> 입법부, 행정부와 지방정부, 사법부와 사법집행기관들이 헌법과 국내법, 국제인권조약 상의 의무를 다하고 일상 업무에서 항상 인민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인권의 문화를 개발하며, 인권의 원칙들에 대한 민간부문의 준수를 증진</p>	<p>1.1. 대중의 인권의식과 이해를 새로운 차원으로 고양, 진작</p> <p>1.2. 2004년 국가의회 및 지방의회 선거, 2005년 대통령 선거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이행을 모니터, 분석</p> <p>1.3. 취약집단의 권리에 관한 연구, 조사 및 모니터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취약집단이 자신이 권리를 위해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p> <p>1.4. 인권이 모든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인권교육 교과과정 및 방법론의 개발을 지원</p> <p>2.1. 의회에서 승인된 법률들이 인권의 기본원칙과 헌법적 개념,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범과 기준 및 절차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입법발의자, 정부부처, 실무그룹 등에 정기적으로 제안과 권고, 정보를 제공</p> <p>2.2. 몽골이 가입한 국제조약들의 이행상황을 모니터하고 관련단체에 권고를 제공하며 이를 위해 국제적, 지역적 단체들과 협력</p> <p>2.3. 정부가 국제인권조약기구에 대한 정기보고의무를 준수하고 정부보고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 지지</p> <p>2.4. 형사절차에 있어 인권침해 및 고문사건 숫자의 감소</p> <p>2.5. 국내법과 국제인권조약의 기준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금시설들의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조직</p> <p>2.6. 사형제도 운영의 변화를 유도</p> <p>2.7. 공공부문의 인권의식 개선, 인권기준 준수 확대, 공무원의 책무성 증대를 유도</p> <p>2.8. 법률가들이 일상 업무에서 기본적 인권원칙들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들의 인권의식 개선을 유도</p> <p>2.9. 국가인권행동계획(NAP)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p> <p>2.10. 민간부문 특히 합작회사들로 하여금 인권에 대한 의무를 인식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p>	<p>교육/협력</p> <p>정책</p> <p>정책</p> <p>교육/협력</p> <p>정책</p> <p>정책, 교육/협력</p> <p>정책</p> <p>조사/구제</p> <p>조사/구제</p> <p>정책</p> <p>정책, 교육/협력</p> <p>정책, 교육/협력</p> <p>정책</p> <p>정책, 교육/협력</p>
	<p><b>목표 3</b> 비정부기구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효과적 협력과 이들의 인권수행능력을 강화</p>	<p>3.1. 현대적 방법들을 활용하며 공동으로 인권훈련, 홍보, 연구조사를 수행</p> <p>3.2. 위원회 자문위원단의 효율성과 수행능력 개선</p> <p>3.3. 인권이슈에 민감히 반응할 수 있도록 언론의 역량을 제고하고, 인권이슈를 보도, 방송하도록 언론을 독려</p>	<p>교육/협력</p> <p>정책, 교육/협력</p> <p>교육/협력</p>
	<p><b>목표 4</b> 위원회가 그 비전과 사명, 수임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적 인권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이러한 위원회의 전문성이 공공부문, 시민사회, 일반대중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도 인정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p>	<p>4.1. 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위원의 숫자와 인적 다양성을 증대</p> <p>4.2. 연례 인권보고서, 인권관련 연구조사의 결과와 제안에 바탕을 둔 위원회의 권고가 실효적으로 이행되는 관례를 확립</p> <p>4.3. 각 지방에 대한 위원회 접근성 개선</p> <p>4.4. 위원회 활동의 기동성을 높이고 몽골의 지도적 인권기구에 걸맞는 위원회의 위상과 수행능력을 강화</p> <p>4.5. 위원회의 활동, 기술협력 기회 등을 위하여 재정마련 대안책을 확보</p> <p>4.6. APF 제10차 연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p> <p>4.7. 국제인권기구들과의 협력을 진작</p> <p>4.8. 위원 및 직원들의 업무수행 능력과 업무조건 향상</p>	<p>기타</p> <p>기타</p> <p>기타</p> <p>기타</p> <p>기타</p> <p>교육/협력</p> <p>교육/협력</p> <p>기타</p>

## 아일랜드 인권위원회

# 아일랜드 사회의 인권 증진과 보호 업무계획 2003년-2006년

### 목차

- 제1장 서문
- 제2장 사명
- 제3장 가치
- 제4장 전략적 접근: 핵심업무 선정기준
- 제5장 핵심 업무영역
- 제6장 기능 및 활동
- 제7장 업무의 조직, 기타 관련사안

[부록 1] 위원회 업무연혁

[부록 2] 인권위원회법(2000) 제9조, 제10조

[부록 3] 위원회 조직도

## 제1장 서문

### 인권위원회의 설립

본 문서는 아일랜드 인권위원회의 운영 지침을 약속하고 각 업무영역별 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아일랜드 인권위원회는 그 기능과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인권위원회법(2000, 2001)을 근거로 2001년 7월 설립되었다. 인권위원회의 설립은 성금요일 협정(역주: 1998년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의 직접적 산물로, 협정에 따라 아일랜드 인권위원회와 북아일랜드 인권위원회는 각 관할 지역의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활동을 책임지고 있다. 또한, 아일랜드 인권위원회의 설립은 1996년 헌법검토그룹(Constitution Review Group)에 의하여 권고된바 있다.

전 세계의 많은 국가에 국가인권기구가 설립되어있다.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은, 비엔나 세계인권대회가 각국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지지하고,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일련의

원칙(파리원칙)이 채택되었던 1993년부터 본격화되었다. 이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전 세계 각 지역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 발전을 지원하여 오고 있다. 여러 국가인권기구 중 실효적(effective)이라 평가받고 있는 위원회는 호주, 캐나다, 덴마크, 인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등이다. 차후 본 문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일랜드의 인권 이슈를 점검하고 알리는 데 있어 타국 인권위원회들의 경험은 매우 유익하고 소중하다.

## 인권위원회의 위원

인권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다.

Dr Maurice Manning, 위원장

Professor William Binchy

Ms Olive Braiden

Mr Martin Collins

Professor Robert Daly

Ms Suzanne Egan

Mr Michael Farrell

Ms Nuala Kelly

Ms Jane Liddy

Ms Clodach McGrory

Professor Fionnuala Ni Aolain

Mr Tom O'Higgins

Professor Gerard Quinn

Mr Mervyn Taylor

Dr Katherine Zappone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들은 2001년 7월 25일 취임하였다. Donal Barrington 판사가 2001년 7월 25일부터 2002년 7월 31일까지 위원장으로 재직하였고, 후임자인 Maurice Manning 박사는 2002년 8월 1일 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 현 위원들의 임기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년이다.

## 본 업무계획의 목적

인권위원회는 아일랜드의 인권 증진 및 보호에 있어 광범위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본 업무계획의 목적은 위원회의 기능과 임무수행을 위한 활동들을 기술하기 위함이다. 본 업무계획은 앞으로 4년 동안 위원회가 집중하고자 하는 핵심 업무영역들을 제시하는 한편 위원회가 현재까지 펼쳐온 활동들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 인권



인권위원회법(2000) 제2조는 위원회가 증진하고 보호해야 할 인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 (a) 헌법에 의해 부여된/보장된 권리와 자유
- (b) 국가가 가입한 협정, 조약 또는 협약에 의해 부여된/보장된 권리와 자유”

### 헌법

아일랜드 헌법 제40조~제44조는 인간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들은 아일랜드 법원의 판례법을 통하여 구체화되어 왔다.

### 국제조약

아일랜드가 가입한 대표적인 국제조약들은 다음과 같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유럽 차원의 대표적 조약은 다음과 같다: 유럽인권협약, 유럽사회헌장, 유럽고문방지협약, 소수민족 보호를 위한 기본협약

### 인권기준

위원회는 그 업무에 있어 국내 판례 및 국제인권기준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권기준과 새로운 판례들은 인권보호를 위한 추가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존의 법적 기준 하에서 적절한 보호를 제공받지 못하던 집단 및 개인에 대해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 협의를 대화

위원회는 앞으로 4년간 다양한 기구·기관·개인들과 협의 및 대화를 수행함에 있어 본 업무계획을 핵심문서로 활용할 것을 지향한다. 설립 이래로 위원회는 많은 집단들을 만났고, 다양한 국내적·지역적·국제적 회의와 세미나에 참가하였으며, 기관 또는 집단이 위원회의 참석을 요청한 여러 회의에 참여하여왔다. 위원회는 북아일랜드 인권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활동하여왔다. 위원회는 본 업무계획의 준비 초기단계에서 유익한 대화들을 나눴으며, 대화에서 제기된 우려와 문제점들을 업무계획에 고려,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여러 우려와 문제점들을 통해 자극을 받았고, 대화를 통해 특별한 기여를 해준 인권 및 평등 관련 기구들의 기대를 통해 힘을 얻었다.

본 업무계획을 통해, 위원회는 앞으로 4년간 조직화된(structured) 협의와 대화에 착수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본 업무계획을 이행함에 있어 기존의 협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융통성 있는 접근방식을 견지할 것이다. 위원회는 앞으로의 활동에 있어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대중적 협의와 정기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핵심활동들을 계획 중이다: 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비정부기구·정부부처·지역별 및 주제별 그룹·정당 등과 일련의 토론회를 가질 것이다; 본 업무계획을 비롯한 위원회의 활동에 가능한 한 많은 일반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대중토론을 개최하고 지방 라디오 및 지방 신문을 활용할 것이다; 협의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적절한 인

권보호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확보하는 데 특별한 노력이 기울여질 것이다; 위원회는 정부가 약속한 사항들의 이행을 통해서 그리고 인권보호를 위한 일련의 이행장치들을 통해서 얼마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것이다; 위원회는 대화와 점점의 과정을 향후 업무계획의 필수요소로 구축해 나갈 것이다.

위와 같은 과정에 있어 위원회는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는 자세를 견지할 것이며, 업무계획상의 변수와 자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설정된 위원회의 세부목표들을 달성함에 있어, 대화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조화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위원회는 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을 환영하며,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는 여타의 모든 기구들과 일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제2장 사명 (Mission Statement)

위원회는 아일랜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법률, 정책, 관행에 있어 완전히 실현되고 보호받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목적들을 적극적으로, 독립적으로 추구해 나갈 것이다. 위원회는, 헌법 및 아일랜드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기준들과의 부합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아일랜드의 법률과 관행이 최상의 국제인권기준에 합치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인권이 적절히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견될 때 위원회는 분명한 그리고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이며, 관련 법률, 정책, 관행의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위원회는 독립적인, 공정한, 개방적인, 접근 가능한, 책임 있는 자세로 그 기능을 수행할 것이며, 위원회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것이다.

위원회는 아일랜드 전 사회에 인권의 문화가 널리 강력히 퍼지게 하기 위해 힘쓰면서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위원회는 법정 기구·정부 부처·비정부기구 및 인권이슈를 다루는 모든 이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높은 수준의 인권 보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유럽이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활동해 나갈 것이다.

성금요일 협정(1998년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북아일랜드 인권위원회와의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에 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며, 협정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아일랜드 섬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합의된 조치들을 반영하고 지지하는" 헌장(Charter)을 제정하기 위해 활동할 것이다.

## 제3장 가치 (Values)

### 핵심 가치

“인권의 보호와 증진”은 위원회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이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모든 인권이 보편적·불가분적·상호의존적·상호연관적임을 인정하며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장을 위해 활동할 것이다.

### 운영 가치

위원회는 독립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위원회는 최대한 접근가능하며 책임성 있는 기구가 될 것이다.

협의를 대화가 위원회 업무의 중심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위원회는 국내외 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위원회는 인권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타 기관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활동할 것이다. 위원회는 타 기관들과 조화롭게 활동하고 불필요한 업무중복을 피하는 것을 지향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위원회는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치, 활용할 것이다.

업무 개발에 있어, 위원회는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수행되고 있는 기존의 국내활동에 대해 “부가가치(added value)”를 창출시키는 방식으로 위원회의 법정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인권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위원회의 중심적 운영 가치가 될 것이다.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평등과 존엄을 존중하고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의 권리를 증진·보호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통해 활동의 동기를 부여받을 것이다.

위원회는 인권의 증진과 보호라는 위원회의 수임사항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에 대한 점검, 평가를 수행할 것이다.

## 제4장 전략적 접근 : 핵심업무 선정기준

### 도입

위원회는 인권이슈와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의견제출 등 일련의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참조: 제6장 기능 및 활동). 위원회는, 법률검토·연구·조사·인식고양 등을 통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 및 집단의 권리를 더욱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 국내의 법률과 관행 중 언제,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한다.

위원회의 관심을 끄는 이슈들의 종류가 매우 방대하다는 것을 위원회는 인지하고 있다. 위원회는, 자신의 권리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인권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그 권리를 주장하고 옹호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의 지원을 요청하기를 기대한다. 향후 4년간 위원회는 일련의 광범위한 인권이슈들과 인권문제들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을 가진 위원회가 모든 인권문제에 대응할 수는 없을 것이며, 따라서 핵심 업무영역들을 정해야만 한다.

위원회는 일련의 일관된 선정기준에 따라 여러 중요한 인권이슈들 가운데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선택은 업무의 효율을 위해, 즉 한정된 자원을 최선의 인권보호를 위해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이는 본 업무계획 기간 동안 위원회가 대응할 수 없게 되는 인권이슈나 인권침해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정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위원회의 능력 또는 자원의 부족은, 해당이슈가 중요하지 않거나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위원회와 그 직원들은 핵심업무 선정기준의 모든 적용여부가 철저히 검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선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위원회는 개인·단체·정부와 충분히 소통할 것이다.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이러한 선정기준은 대중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 선정기준

### 별주 1

아래에 나열된 선정기준은 위원회가 어떤 인권이슈에 대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들이다.

#### 이슈의 요건

- 위원회의 법정 기능(참조: 제6장 기능 및 활동)에 해당할 것. 즉, 위원회가 해당 인권이슈에 대해 조사, 보고, 행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어야 함.
- 적절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권리에 해당할 것. 만약 타 기관이 이미 해당 이슈를 다루고 있다면, 위원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노력들과 위원회의 행동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함.
- 위원회의 핵심 가치, 즉 인권의 보호에 부합될 것. 위원회는 해당이슈에 관한 업무가 인권보호를 진작시킬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함.

### 별주 2

상기의 요건에 추가하여, 아래의 선정기준 중 최소한 두 개 이상을 만족시켜야 한다.

#### 이슈의 요건

- 긴급성. 해당 이슈의 해결이 긴급히 필요한 사항임을 위원회가 확신해야 함. 예를 들어, 어떠한 (추가적) 인권침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위협이 존재할 경우. 오래된 인권이슈도 우선순위에 포함될 수 있음.
- 다수의 권리 구제와 관련된 사안. 광범위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문제 또는 잠재적으로 광

범위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위원회가 확신해야 함.

-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내포한 기본 원칙들의 문제
- 심각한 그리고/또는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대해 확실한 혐의가 있을 경우
- 위원회의 권한과 전문성에 비추어, 아일랜드의 인권보호 강화에 뚜렷하고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이슈

### 범주 3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 다음의 고려사항들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업무에 대한 전략적 접근에 있어, 위원회는 각 행동을 통해 기대되는 바를 항상 고려할 것이다. 특히, 해당 이슈에 대한 위원회의 행동이 아일랜드 사회의 인권 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을지, 진행 중에 있는 개혁절차들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그 결과를 통해 인권보호의 분야에서 상징적 지침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개인이나 집단에게 방해물로 작용해왔던 장기적인 인권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등을 고려할 것이다.

위원회는 아일랜드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소외되어왔던, 인권침해의 해결을 위한 공식 절차들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가져왔던 집단 또는 개인들에 대해 민감히 반응할 것이다.

위원회의 업무는 위원회의 수임사항에 해당하는 인권이슈들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반영할 것이다.

위원회는 본 업무계획 기간 동안, 위원회 자체의 전문지식과 인권문제에 대한 이해, 인권문제 해결능력 등에 기여하는 이슈들과, 위원회의 효율성을 궁극적으로 증대시키는 이슈들에 관해 활동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인권이슈를 본 업무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위원회에 새 입법안의 검토를 요청하거나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건이 법원에 제기되는 경우처럼, 어떤 인권이슈가 갑자기 불거져 나올 수도 있다. 타 기구 및 개인들과의 협의 및 대화의 과정에서,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인권이슈가 떠오를 수도 있다. 위원회는 본 업무계획에 서술된 전반적인 전략에 충실하는 한편, 여타의 상황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게 반응할 수 있는 운영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 제5장 핵심 업무영역

위원회는 전원회의 및 하부 위원회들(참조: 제7장 업무의 조직, 기타 관련 사안)의 회의를 통해 정책 이슈들을 논의해왔다. 이러한 내부논의와 더불어, 위원회는 여타의 인권관련 기관들과 만나 위원회가 함께 협력하여 활동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해왔다. 또한 위원회는 비정부기구 및 개인들과 만나 위원회에 대한 우려와 기대 사항들을 공유하여왔다.

이러한 논의와 위원회의 법정 기능, 핵심업무 선정기준 등에 바탕으로, 위원회는 본 업무계획